

청주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1가단680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68,616원 및 그 중 19,817,147원에 대해 2021. 6. 7.부터 2021. 12.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2020. 9. 23.자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9. 24. 접수 제1207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9.경 피고 A가 C은행 사천동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그 무렵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손해금율(2018. 5. 1.부터 연 10%임)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2020. 9. 10.경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내용의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6. 7. 20,138,877원을 대위변제한 후
321,730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련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251,469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는 2020. 9.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9. 24.
접수 제1207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20,068,61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817,147원(= 20,138,877원 - 321,7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6.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12.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9. 23.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 A가 그 직전인 2020. 9. 10. 보증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2021. 6. 7. 실제로 위 은행에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평소 친분이 있던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어 위 돈이 E에게 지급되었는데, 이후 사기행각이 발각된 E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고소취하 및 합의 대가로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고,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26,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 ① D은 2018. 10. 6.경 E와 사이에 ‘목욕탕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천만 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일부가 부족하자 평소 목욕탕시설에서 마사지 업무 등을 함께 하며 친분이 있던 피고 B에게 금원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B가 같은 날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으며, 위 돈이 E에게 지급되었다.
- ② E가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3,950만 원을 지급받고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목적물 사용 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D의 위임을 받은 피고 B가 E를

고소하였고, E는 D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648, 2020고단395(병합)}.

③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위해 E는 2020. 9.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20년 제390호로 ‘발행인을 E와 피고 A, 수취인을 피고 B’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B는 D의 대리인 자격으로 E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④ 위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648, 2020고단395(병합) 사건에서 2020. 9. 24. “E가 G를 개업하여 마사지실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를 기망하여 D으로부터 2018. 6. 29. 800만 원, 2018. 10. 6. 2천만 원, 2018. 12. 5. 1천만 원, 2019. 1. 3. 150만 원 등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D’으로 특정되었으나 그 피해액 3,950만 원에는 피고 B가 D에게 2018. 10. 6. 지급한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B 역시 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피고 B는 D의 위임을 받아 형사고소 및 이후의 합의절차를 진행한 점, ② D이 당시 중국에 있던 관계로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당사자로 기재된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 4천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까지 피고 A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이고,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E가 담보제공 목적으로 데려온 피고 A의 재산상태에 대해 미리 파악하거나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